

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5-38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 23.

제 출 자 : 박형덕 의원 외3 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9. 4. 1.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경직 신고의무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서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경직금지를 제외한 다른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.(안 제10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경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.
-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의장은 경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0조(겸직금지)의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0조(겸직금지)①의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<u>②의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.</u></p> <p><u>③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

[별지 서식]

지방의회의원 겸직(변경)신고서

소속정당		선거구분	지역구	
성명	한글		비례대표	
	한자	생년월일		
겸직내용	기관·단체명			
	직위	재직기간		
	보수	(택일) 연월원원	전화번호	
	주소			
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동두천시의회의원 (인)

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